

뉴:홈



①일반형, 나눔형, 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,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는 공공주택입니다.

공급유형 일반공급, 특별공급(생애최초, 다자녀가구, 노부모부양, 국가유공자, 기관추천)

뉴홈유형 일반형, 나눔형(이익공유형), 선택형(6년 공공임대)

● 공급대상자별 자격사항 요건

| 신청자격 | 특별공급 | | | | | | | 우선공 (1순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|--|
| | 기관추천 | 청년 | 신생아 | 다자녀 | 신혼부부 | 노부모부양 | 생애최초 | |
| 공통 | 무주택세대구성원(청년의 경우 무주택자),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) 거주자 | | | | | | | |
| 입주자저축 (주택청약종합저축 , 청약저축) | 6개월, 6회 이상 국가유공자, 장애인 입주자 저축 불필요 | 6개월, 6회 이상 | 6개월, 6회 이상 | 6개월, 6회 이상 | 6개월, 6회 이상 | 입주자저축 1순위자 (가입 1년 경과, 12회 이상 납입) | 입주자저축 1순위자 (가입 1년 경과, 12회 이상 납입) 선납금 포함, 600만원 이상 | 입주자자 1순위 (가입 1 경과, 12 이상 납 |
| 총자산요건 | 미적용 | 신청자 본인 270만원 이하 부모 1,011백만 원 이하 | 354백만원 이하 | | | | | |
| 소득 요건* | 미적용 | 적용 | | | | | | |
| 세대주 요건 | 미적용 | 미적용 | 미적용 | 미적용 | 미적용 | 적용 | 미적용 | 미적용 |

| 신청자격 | 특별공급 | | | | | | | 우선공 (1순위)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기관추천 | 청년 | 신생아 | 다자녀 | 신혼부부 | 노부모부양 | 생애최초 | |
| 세부 요건 | 바로가기 |

*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

● 일반공급 (공급물량의 10%)

(입주자격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‘사전청약 모집공고일’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
 - 총자산 354,000천원 이하인 분
 - 소득기준 100%* (3인 가구 7,626천원, 4인 가구 8,578천원 등) 이하인 분
- *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%, 2인인 경우 110% 이하

일반공급 당첨자 선정

- (우선공급) 일반공급 대상세대수의 80%를 입주자저축 1순위자(가입 1년 경과, 12회 이상 납입)를 대상으로 아래 ‘일반공급 우선공급(1순위)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’에 따라 우선공급하며,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

일반공급 우선공급(1순위)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

| 순차 | 전용 40m ² 초과 분양주택 순차 |
|----|--|
| 1 |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(10만원/1회)이 많은 분 |
| 2 | 저축총액이 많은 분 |

* (누수액기간 산정) 만 30세가 되는 날(30세 이전에 본인 시 본인신고일)부터 계산아래 최근 누수액시기 전 날까지

- (잔여공급) 잔여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

● 청년 특별공급(공급물량의 15%)

(입주자격)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,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

- 총자산 (신청자 본인) 270,000천원 이하, (부모) 1,011,000천원 이하인 분
-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%(1인 5,037천원)이하인 분

청년특별공급 당첨자 선정

- (우선공급) 청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%를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(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 포함)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을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, 경쟁시 '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(총9점)'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

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|--|
| 본인의 월평균 소득 | 3점 | 70% 이하 : 3점, 70% 초과 100% 이하 : 2점, 100% 초과 : 1점 |
| 해당 시·도 연속 거주 기간 | 3점 | 2년 이상 : 3점, 1년 이상 2년 미만 : 2점, 1년 미만 : 1점, 미거주 : 0점 |
|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| 3점 | 24회 이상 : 3점, 12회 이상 23회 이하 : 2점, 6회 이상 11회 이하 : 1점 |

- (잔여공급) 잔여물량을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, 경쟁시 '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(총 12점)'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

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본인의 월평균 소득 | 3점 | 70% 이하 : 3점, 70% 초과 100% 이하 : 2점, 100% 초과 : 1점 |
| 해당 시·도 연속 거주 기간 | 3점 | 2년 이상 : 3점, 1년 이상 2년 미만 : 2점, 1년 미만 : 1점, 미거주 : 0점 |
|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| 3점 | 24회 이상 : 3점, 12회 이상 23회 이하 : 2점, 6회 이상 11회 이하 : 1점 |
| 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| 3점 | 5년 이상 : 3점, 3년 이상 5년 미만 : 2점, 3년 미만 : 1점, 해당없음 : 0점 |

● 신생아 특별공급(공급물량의 30%)

(입주자격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2세 이하 자녀를 두신 분
- 총자산 354,000천원 이하인 분
- 소득기준 140% 이하인 분

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

- (우선공급)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%를 소득 100%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
- (잔여공급)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20%를 소득 140%이하인 분에게 순차공급

- (추첨제)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10%를 소득 140%이하인 분에게 추첨공급

● 신혼부부 특별공급 (공급물량의 10%)

(입주자격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(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),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
-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,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
- 총자산 354,000천원 이하인 분
- 소득기준 130%* (3인 가구 9,915천원, 4인 가구 11,151천원 등)이하인 분

*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('소득세법'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)이 있는 경우(이하 '맞벌이') 140% 이하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

- (우선공급)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%를 소득 100%(맞벌이인 경우 120%)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'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'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
 - *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%(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30%) 이하
- (잔여공급) 잔여물량은 소득 130%(맞벌이인 경우 140%)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내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
 - *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%(가구원수가 2인이면서 맞벌이인 경우 150%) 이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

| 구분 | 선정방법 |
|-----|--|
| 1순위 |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(임신, 입양 포함)하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|
| 2순위 |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('18.12.18.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,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) |

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
| 가구소득 | 1점 | 월평균 소득의 80%(맞벌이인 경우 100%) 이하 : 1점, 해당없음 : 0점 |
| 자녀의 수 | 3점 | 3명 이상 : 3점, 2명 : 2점, 1명 : 1점, 0명 : 0점 |
|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| 3점 | 3년 이상 : 3점, 1년 이상 3년 미만 : 2점, 1년 미만 : 1점, 미거주 : 0점 |
|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| 3점 | 24회 이상 : 3점, 12회 이상 24회 미만 : 2점, 6회 이상 12회 미만 : 1점 |

|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|--|
| 신혼부부만 | 혼인기간 | 3점 | 3년 이하 : 3점, 3년 초과 5년 이하 : 2점, 5년 초과 7년 이하 : 1점, 7년 초과 : 0점 |
| 한부모가족만 | 자녀나이 | 3점 | 2세 이하 : 3점, 2세 초과 4세 이하 : 2점, 4세 초과 6세 이하 : 1점, 해당없음 : 0점 |

● 생애최초 특별공급(공급물량의 10%)

(입주자격)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(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)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(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),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분
- 혼인 중이거나 자녀(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)가 있는 분
-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
- 총자산 354,000천원 이하인 분
- 소득기준 130%* (3인 가구 9,915천원, 4인 가구 11,151천원 등) 이하인 분
*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% 이하

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

- (우선공급)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70%를 소득 100%이하인 분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공급
*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% 이하
- (잔여공급) 잔여물량을 소득 130% 이하인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
*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40% 이하

●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(공급물량의 10%)

(입주자격)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, 납입횟수 6회 이상인 분
- 총자산 354,000천원 이하인 분
- 소득기준 120%(3인 가구 9,152천원, 4인 가구 10,293천원 등) 이하인 분

(당첨자 선정) 아래 배점표(100점 만점)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, ②신청자 나이(연원일 계산) 순으로 선정

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

| | | |
|--------|-----|---|
| 미성년자녀수 | 40점 | 5명 이상 : 40점, 4명 : 35점, 3명:30점 |
| 영유아자녀수 | 15점 | 3명 이상 : 15점, 2명 : 10점, 1명 : 5점, 0명 : 0점 |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|--|
| 세대구성 | 5점 | 3세대 이상 : 5점, 한부모 가족 : 5점, 해당없음 : 0점 |
| 무주택기간 | 20점 | 10년 이상 : 20점, 5년 이상 10년 미만 : 15점, 1년 이상 5년 미만 : 10점, 해당없음 : 0점 |
| 해당 시·도 거주 기간 | 15점 | 10년 이상 : 15점,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점, 1년 이상 5년 미만 : 5점, 미거주 : 0점 |
|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| 5점 | 10년 이상 : 5점, 해당없음 : 0점 |

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(공급물량의 5%)

(입주자격)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

-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(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,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)
- 총자산 354,000천원 이하인 분
- 소득기준 120%* (3인 가구 9,152천원, 4인 가구 10,293천원 등)이하인 분
*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30% 이하

(당첨자 선정) 일반공급 우선공급(1순위)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,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

● 기관추천 특별공급(공급물량의 10%)

(입주자격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,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

| 추천대상자 |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|
|--|---|
| 국가유공자, 장애인 | 필요 없음 |
|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 이상 복무군인, 우수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선수, 대한민국 체육유공자 | 입주자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|

* 대상자별 기관추천 자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

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

